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갑)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처리기간	즉시
--	------	----

1. 신고자 인적사항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태	④ 종목

2.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 합계

구분	매입처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
⑤ 합계				
⑥ 영수증 수취분				
⑦ 계산서 수취분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

가.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공제가능한 금액 등

매출액			대상액 한도계산		당기 매입액			⑩ 공제가능한 금액 (=⑫-⑭)
⑧ 합계	⑨ 예정분	⑩ 확정분	⑪ 한도율	⑫ 한도액	⑬ 합계	⑭ 세금 계산서	⑮ 영수증 등	

나. 과세기간 공제할 세액

⑪ 공제대상금액 (=⑬과 ⑭의 금액 중 적은 금액)	공제대상세액		이미 공제받은 세액			⑮ 공제 (납부)할 세액 (=⑮-⑯)
	⑫ 공제율	⑬ 공제대상 세액	⑭ 합계	⑮ 예정 신고분	⑯ 월별 조기분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단 중고자동차는 거래건별로 기재)

일련 번호	⑮ 공급자		⑮ 구분 코드*	⑮ 건수	⑮ 품명	⑮ 수량	⑮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⑮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⑮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합계								
1									
2									
3									
4									
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5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 구비서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공급자가 5곳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이 신고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어야 하며 금액은 원단위까지 표시해야 합니다.
2. "⑤ 합계"란: "⑥ 영수증 수취분"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3. "⑥ 영수증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영수증을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4. "⑦ 계산서 수취분"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처 수, 건수, 취득금액, 매입세액 공제액의 합계를 적으며, 별도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5.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 시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110분의10
 - 나. 중고자동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은 105분의 5)
6. 중고자동차 중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 제작연월일로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 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다른 그 밖의 관계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다만,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7. "3.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관련 신고내용"란("⑧ 합계"란부터 "㉓ 공제(납부)할 세액"란까지): 중고자동차의 경우 작성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만 적습니다.
8. "⑧ 합계"란: 과세기간별 재활용폐자원 매출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⑨ 예정분"란: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⑪ 한도율"란: 100분의 80(2008년 이전 취득분은 100분의 90)을 적습니다.
11. "⑫ 한도액"란: 매출액합계(⑧)에 한도율(⑪)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⑭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 수취분 재활용폐자원 공급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3. "⑮ 영수증 등"란: "⑥ 영수증 수취분 취득금액"란과 "⑦ 계산서 수취분"란의 취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4. "⑯ 공제가능한 금액"란: "⑫ 한도액"란에서 "⑭ 세금계산서"란을 뺀 금액을 적으며,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5. "⑰ 공제대상세액"란: "⑰ 공제대상금액"란에 "⑯ 공제율"란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6. "㉒ 합계"란: 예정신고 및 월별 조기환급 신고 시 공제받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7. "㉓ 공제(납부)할 세액"란: 예정신고 및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을 확정신고 시 정산한 결과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4쪽 중 제3쪽 (44)번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란에 음수(△)로 적습니다.
18. "4. 영수증 수취분에 대한 매입처 명세"란("㉔ 공급자"란부터 "㉙ 취득금액"란까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및 단체와 개인 등이 재활용폐자원 등을 판매하고 발행한 영수증 상에 적힌 내용을 중고자동차와 기타 재활용폐자원을 구분하여 거래처별로 합하여 적으며, 공급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중고자동차의 경우 거래건수가 5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2)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9. "㉙ 차량번호"란 및 "㉚ 차대번호"란: 중고자동차 매입 시에만 적습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을)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공급자		구분 코드*	건수	품명	수량	차량번호 (중고자동차)	차대번호 (중고자동차)	취득금액
	성명 또는 상호(기관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구분코드 : 1. 중고자동차, 2. 기타 재활용폐자원